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및 현안을 전담하는 차관보 1명을 신설하여 지방행정·자치분권·균형발전지원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도록 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및 지방시대 실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조직실, 디지털정부국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을 디지털정부실, 혁신조직국,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및 균형발전지원국으로 개편하며,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프로세스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용 및 재난 특성을 고려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재난협력실을 안전예방정책실, 자연재난실, 사회재난실 및 재난복구지원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며, 행정안전부 재난관

리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18. ~ 8.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운영지원과 · 정부혁신조직실 · 디지털정부국 · 경찰국 · 지방자치균형발전실 · 지방재정경제실”을 “운영지원과 · 디지털정부실 · 혁신조직국 · 경찰국 · 지방행정국 · 자치분권국 · 균형발전지원국 · 지방재정경제실”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1. 지방행정 · 자치분권 ·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7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 종합 · 조정 및 주요 현안의 관리
2. 예산의 편성 · 집행 · 조정 및 성과관리
3.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4.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5.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6.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8.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9.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의 담당 실·국 지정 및 협의·조정
10. 부 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1. 부 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
12.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13. 부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
14. 부 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15. 정부청사관리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
16.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7.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18.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19.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20. 법령·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2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22. 부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
2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24. 부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25. 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6. 부 내 정보자원·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7. 부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8.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29.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0.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1.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추진 및 홍보
32.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의 수출모델 연구·개발 및 보급
33. 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34.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협력 사업 관련 통역·번역 업무 지원
35.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36.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
3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38. 부 내 대테러 활동계획 총괄·조정
39. 부 내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

40. 부 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1.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42. 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감독

43. 부 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44. 부 내 재난안전관련 계획 총괄·조정

제11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디지털정부실) ① 디지털정부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정부실에 디지털정책국, 공공데이터국 및 공공서비스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3.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전자정부의 총괄·조정 에 관한 사항
6.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8.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조성
13.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관련 제품(「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1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6.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17.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8.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19.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21. 행정정보 목록 관리와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22.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
에 관한 사항
24.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2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과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2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과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28.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과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9.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와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30.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31.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2.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 도입에 관한 사항
33. 전자정부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4.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5. 전자정부 관련 해외진출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6.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37. 공공데이터의 관리·공유·개방·이용 등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과 기본계획의 수립·집행·총괄·조정
38.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에 관한 사항
3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0.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4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42. 공공데이터 구축·품질관리·표준화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에
관한 사항
43. 국가기준데이터 구축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4.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및 결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5.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
립
4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
47.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8.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49.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50.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51. 전자정부 공통서비스와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

- 52.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과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 53.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 54.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에 관한 사항
- 55.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추진과 총괄·조정
- 56.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림,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7.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58.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 5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60.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1.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62.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구성에 관한 사항
- 63.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64.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 65.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 66.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67.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발굴에 관한 사항
- 68.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9.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도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0. 전자증명서에 관한 제도 개선과 전자증명서의 발급·유통에 관한 사항

71.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72. 모바일 기반 전자정부서비스와 공통 인프라의 구축·운영

73.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공공데이터국장은 제3항제37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공공서비스국장은 제3항제48호부터 제7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혁신조직국) ① 혁신조직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3.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협의체 운영

4.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과 성과 관리
·평가
5. 정부혁신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와 우수사례 발굴·확산
6.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 총괄·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평가, 우수사례 확산·
전파 및 교육·홍보
8.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과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9.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11.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운영·개선
12.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13. 협업과제 중 시스템 연계·통합과 정보공유 관련 부처 간 업무조
정 및 지원
14. 지식행정제도의 운영·대외협력
15.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16.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17.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18.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19.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0.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

례의 발굴·확산

21.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22.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영과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23.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2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평가와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26.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7.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28. 문서·관인과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에 관한 사항
29.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30.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홍보 및 제도화 연구
31.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과 서비스 과제의 발굴·관리
32.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확산과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33. 공무원 제안 제도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개선
34. 생활공감정책의 추진과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
· 운영 및 지원
35.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6. 조직개편·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와 다수 중

양행정기관 관련 직제·기능의 총괄·조정

3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관리와 관련 법령에 관한 협의

38.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39.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총괄과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40.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개선

41.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42.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3.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대상 직위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의

44.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관한 협의

45.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개선

46.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제도 관리

47. 행정기관 등의 조직·기능과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48.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49.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50.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지방행정국) ① 지방행정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5.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
8.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부금품 모집(「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2.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13.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14.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15.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관리
1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8.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9.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0.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1.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22.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사업의 추진
2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24.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
25. 자전거의 날 운영, 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26.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27.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28.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29.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30.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3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치분권국) ① 자치분권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2.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총괄

4.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의 수립·지원

5.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
관리

6.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
안 연구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기획·총괄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협조

9.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

· 발전

10.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통합·명칭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지원
12.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14.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15.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유지
16.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협조
18.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지원
19.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20.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2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2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

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3.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24.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개선

25.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제소 등 지원

26.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운영 지원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① 균형발전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 개선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
의 지원 및 개선

4. 접경지역 및 섬지역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지
원

6.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7.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10. 지역사회 활성화에 관한 기획 및 관련 법령의 관리
11.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역주민 제안 사안의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14.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희(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15.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16.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7.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연구 및 지원
18.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19. 정보화마을의 기획·개선
20.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21.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22.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3.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4. 주소정보 운영 및 조정 총괄
25.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26. 주소정보 활용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7. 주소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8.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재정경제실에 지방재정국, 지방세제국 및 지역경제지원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관리·연구·개선
2.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정보화 총괄
3.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5. 「지방재정법」 제88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
6.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운영 및 지도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11. 지방재정 분석·진단·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12. 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3. 지방재정의 점검·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5.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16. 지방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
17.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1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재무회계·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19.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지도
21.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2.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개선
23.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4. 지방세의 중과세·비과세·감면·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25.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26. 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27. 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28. 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조사 및 연구

29. 지방세입 납부체계의 연구·개선
30. 지방세 징수제도 및 업무개선 등 총괄
31.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제도의 운영
32. 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33.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 운영
34. 부동산 과세자료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생산·관리
35.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
36. 지방세외수입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총괄
38. 지방세외수입 통계 관리·분석 및 정보화 총괄
39.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지원
40. 지방세특례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4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4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와 관련된 사항
43.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44.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4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6. 지방자치단체의 향토 핵심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
47.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규제의 발굴·정비

48.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지원
49. 새마을금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
50.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51.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감독
52.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정책 수립 총괄
54.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련 제도의 연구·운영에 관한 사항
55.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56.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감독
57.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8.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운영 지원
- ④ 지방재정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 ⑤ 지방세제국장은 제3항제2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 ⑥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제3항제41호부터 제5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제2항 중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재난협력실”을 “안전예방정책실, 자연재난실, 사회재난실, 재난복구지원국”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안전예방정책실) ① 안전예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안전예방정책실에 안전정책국, 예방정책국 및 재난안전정보센터를 두되, 각 국장 및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
3.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9. 소방안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
10.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11. 재난안전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
12.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1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15.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6.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17.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개정 및 협의·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8. 재난의 예방 등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
19.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20.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담당 종사자 예방안전 교육 총괄·조정
2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원의 현황 관리
2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3.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조정
24. 안전기준의 등록·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운영
25.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6. 생활안전정책 총괄·지원

27.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개선
28.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29.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지원
3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기획·제도개선
31.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사업 추진
3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33. 어린이 보호구역·도시공원·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4. 어린이안전 정책 총괄 및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5. 재난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6.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재난 취약 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점
검 기획·총괄
37.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긴급 안전점검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39.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40. 물놀이,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추진
41.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
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2.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
으로 한정한다)

43.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44.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45. 안전 전문인력 관리·교육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6. 국민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47.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8. 국가재난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49.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0. 재난 관련 정보시스템의 총괄·조정 및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1. 재난관리정보 활용체계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2.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3.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제도·정책에 관한 사항
54.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④ 안전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 ⑤ 예방정책국장은 제3항제16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 ⑥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은 제3항제48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자연재난실) ① 자연재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연재난실에 재난관리정책국 및 자연재난대응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대비·대응·복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2.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5.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특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
6. 재난관리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재난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9. 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의 기획·평가 총괄
11. 국가 재난대응 분야별 상시 훈련에 관한 사항
1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3.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총괄·조정
14. 재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학회·협회·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15. 민간부문의 재난대비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16.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수습·복구 활동 지원

17. 재난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18.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1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20.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1.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3.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24.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25.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26.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7.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
28.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9. 방재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 운영
31.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및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의 운영
32.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33.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
34. 재난관리 매뉴얼 총괄·운영 및 평가
35. 재난분야 매뉴얼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3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지원은 제외한다)
37. 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운영은 제외한다)
38.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9. 재난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0. 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1.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2. 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개발·보급은 제외한다)
43. 지진·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4.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추진
45. 지진·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④ 재난관리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

무를 분장한다.

⑤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제3항제32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사회재난실) ① 사회재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회재난실에 사회재난정책국 및 사회재난대응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 분야 협업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사회재난 분야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 대응역량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사회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
5. 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 관리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 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보급
8.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총괄
9.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10.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운영 총괄
11. 재난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12. 예기치 못한 대형·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

13. 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분석
14. 사회재난 관리대책의 수립·조정 및 사전대비·대응 총괄
15. 사회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 사회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사회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18. 사회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9. 사회재난 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 지원
20. 사회재난 관련 원인·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21. 사회재난 분야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22. 사회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
23. 사회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4. 테러 대비 관련 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
한 사항
25. 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6. 국가핵심기반 보호 및 관리 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27.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사회재난 관련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29. 사회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30. 사회재난 기능별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 ④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

무를 분장한다.

⑤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제3항제14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① 재난복구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복구 정책과 대책의 수립·조정·총괄
2.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3.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 예산의 운영·관리
4.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5.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연재난 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의 운영
7. 재해복구사업 사후 분석·평가 운영 총괄
8.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9.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 지원
10. 재난구호와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총괄 및 제도의 운영
11. 이재민 구호 및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난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난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5. 의연금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 관한 사항
18.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19. 풍수해 보험 등 재난과 관련된 보험의 개발·보급 및 보험료의 지원
20. 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 계획 수립
21. 재난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단 파견·운영 총괄
22. 구조·구급·수색 등 지원을 위한 특수 기동 인력의 편성총괄 및 재난현장 파견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조정

제5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115명”을 “113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8개 직위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3조제2항 전단 중 “안전정책실에 두는 1개 정책관등, 재난관리실에 두는 3개 정책관등, 재난협력실에 두는 1개 정책관등”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예방정책실에 두는 재난안전정보센터, 자연재난실에 두는

재난관리정책국·자연재난대응국, 사회재난실에 두는 사회재난정책국·사회재난대응국, 재난복구지원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책관등 및 과”를 “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655”를 “1,6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13”을 “1,608”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6”을 “35”로, 3급 또는 4급 이하(총경 포함) “1,544”를 “1,540”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조직	정원
1) 지방행정국 1개 과	0명
2)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정보센터 1개 과	6명
3)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국 1개 과	4명
4) 균형발전지원국 1개 과	2명
5)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정보센터 1개 과	4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신 설> ① 행정안전부에 <u>운영지원과 · 정부혁신조직실 · 디지털정부국 · 경찰국 · 지방자치균형발전실 ·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u> ② (생 략) <신 설>	제4조(하부조직) ① <u>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u> ② ----- <u>운영지원과 · 디지털정부실 · 혁신조직국 · 경찰국 · 지방행정국 · 자치분권국 · 균형발전지원국 · 지방재정경제실 -----.</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의2(차관보) ① <u>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② <u>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u> 1. <u>지방행정 · 자치분권 ·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사항</u> 2. <u>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u>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 ② (생 략) ③ <u>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u> 1. <u>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u>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u>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 종합 · 조정 및 주요 현안</u>

2.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3.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 추진

4. 부 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 · 개선 및 총괄

5.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6. 부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 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

7. 부 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 · 개선

7의2. 정부청사관리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

8.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 종합 · 조정 및 주요 현안의 관리

9. 예산의 편성 · 집행 · 조정 및 성과관리

10.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11. 부 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의 관리

2. 예산의 편성 · 집행 · 조정 및 성과관리

3.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4.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5.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6.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 추진

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 · 선정, 추진상황 확인 · 점검 및 관리

8.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 · 조정 및 지원

9.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의 담당 실 · 국 지정 및 협의 · 조정

10. 부 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1. 부 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 · 개선 및 총괄

12.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13. 부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

<u>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u> 13. <u>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u> 14. <u>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u> 14의2. <u>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u> 15. <u>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u> 15의2. <u>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u> 16. <u>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u> 17. <u>법령·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u> 18. <u>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u> 19. <u>부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u> 20. <u>삭 제</u> 21. <u>부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u> 22. <u>부 내 정보화 예산(법정부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u>	<u>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u> 14. <u>부 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u> 15. <u>정부청사관리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u> 16. <u>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u> 17. <u>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u> 18. <u>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u> 19. <u>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u> 20. <u>법령·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u> 21. <u>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u> 22. <u>부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u> 23. <u>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u> 24. <u>부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u> 25. <u>부 내 정보화 예산(법정부</u>
---	---

23. 부 내 정보자원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4. 부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
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
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5.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 · 조
정

25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
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
항

25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 · 추진 및
홍보

27.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의 수출모델 연
구 · 개발 및 보급

28.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 · 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29. 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
한 사항

3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
무 연구 · 지원

31.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
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6. 부 내 정보자원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7. 부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
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
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8.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 · 조
정

29.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0.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
화에 관한 사항

31.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 · 추진 및
홍보

32.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의 수출모델 연
구 · 개발 및 보급

33. 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
한 사항

34.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
협력 사업 관련 통역 · 번역
업무 지원

35.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u>협력 사업 관련 통역·번역 업무 지원</u> 32. <u>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u> 33. <u>부 내 대테러 활동계획 총괄·조정</u> 34. <u>부 내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u> 35. <u>부 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u> 36. <u>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활동에 대한 지도·감독</u> 37. <u>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감독</u> 38. <u>부 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u> 39. <u>부 내 재난안전관련 계획 총괄·조정</u>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생략)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u><신 설></u>	<u>정부·기관에 대한 정책자문</u> 36. <u>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u> 37. <u>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u> 38. <u>부 내 대테러 활동계획 총괄·조정</u> 39. <u>부 내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u> 40. <u>부 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u> 41. <u>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활동에 대한 지도·감독</u> 42. <u>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감독</u> 43. <u>부 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u> 44. <u>부 내 재난안전관련 계획 총괄·조정</u> 제11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 (현행과 같음) 10. <u>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u>
---	--

10. (생 략)

제12조(정부혁신조직실) ① 정부

혁신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
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
정·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
·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3.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
트워크의 구축과 협의체 운영

4.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
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과
성과 관리·평가

5. 정부혁신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와 우수사례 발굴·
확산

5의2.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 총괄·지원

5의3.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12조(디지털정부실) ① 디지털

정부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정부실에 디지털정책
국, 공공데이터국 및 공공서비
스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
·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
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3.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중
장기 기본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관련 과제 발굴·평가, 우수사례 확산·전파 및 교육·홍보
 6. 지식행정제도의 운영·대외협력
 7.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간 협업체도 운영·개선
 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협업과제 중 시스템 연계·통합과 정보공유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0.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11.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12.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13.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과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14.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의2.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

및 전자정부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6.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8.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 조성
 13.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관련 제품(「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

선 및 운영 · 지원

- 16. 생활공감정책의 추진과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 · 운영 및 지원
- 17.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 · 홍보 및 제도화 연구
- 18.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과 서비스 과제의 발굴 · 관리
- 19.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 · 확산과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 20. 공무원 제안 제도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 개선
- 2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 22.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 · 개선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 · 확산
- 23.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 · 점검 및 평가
- 24.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 · 운영과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 25.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26. 공공데이터의 관리 · 공유 ·

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시험 · 평가에 관한 사항

- 1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 16.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 17.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 18.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 · 조정
- 19.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0.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21. 행정정보 목록 관리와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 22.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3.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24. 「전자정부법」 제37조에

개방·이용 등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과 기본계획의 수립·집행·총괄·조정
 2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8.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9.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3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31. 문서·관인과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32.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3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3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 관련 평가와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다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2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과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2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과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28.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과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9.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와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30.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31.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2.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 도입에 관한 사항

35.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5의2.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36. 공공데이터 구축·품질관리·표준화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에 관한 사항
 37. 국가기준데이터 구축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및 결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9.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
 40.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
 4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2.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43. 조직개편·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와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직제·기능의 총괄·조정
 4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

33. 전자정부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4.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5. 전자정부 관련 해외진출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6.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37. 공공데이터의 관리·공유·개방·이용 등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과 기본계획의 수립·집행·총괄·조정
 38.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0.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4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42. 공공데이터 구축·품질관리·표준화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에 관한 사항

영에 관한 총괄·조정·관리
와 관련 법령에 관한 협의
 45.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제도 운영의 지원
 46.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제도 관리
 47.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
·총괄과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48.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개선
 49.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50. 행정기관 등의 조직·기능
과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
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
한 사항
 51.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
발·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2.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
 2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대상
 직위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의
 53.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관한 협의
 54.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

43. 국가기준데이터 구축과 이
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4.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
터 등록 및 결합 등 관리에 관
한 사항
 45.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
 4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
의 발굴 및 수행
 47.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무
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8.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
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
원
 49.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
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50.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개
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51. 전자정부 공통서비스와 공
통 기반의 구축·지원
 52.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과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53.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 개선

55.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56.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57.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8.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54.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EA)의 도입·확산에 관한 사항

55.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추진 과 총괄·조정

56.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림,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7.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8.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5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0.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1.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62.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63.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4.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65.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66.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67.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발굴에 관한 사항
68.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9.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도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0. 전자증명서에 관한 제도 개선과 전자증명서의 발급·유통에 관한 사항
71.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72. 모바일 기반 전자정부서비스와 공통 인프라의 구축·운영
73.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3조(디지털정부국) ① 디지털 정부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 · 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 · 조정
3.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중

④ 디지털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공공데이터국장은 제3항제37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공공서비스국장은 제3항제48호부터 제7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혁신조직국) ① 혁신조직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 · 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 · 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 · 협력
3. 정부혁신 관련 법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협의체 운영
4.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 · 선정, 추진상황 확인 · 점검과

장기 기본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전자정부의 총괄·조정
에 관한 사항

6.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
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개방
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 조
성

9. 전자정부 공통서비스와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

10.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와 성
과분석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
·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과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성과 관리·평가

5. 정부혁신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와 우수사례 발굴·
확산

6.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
무 총괄·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
련 과제 발굴·평가, 우수사례
확산·전파 및 교육·홍보

8.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총괄·조정과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9.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
·개선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
선

11.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운영·
개선

12.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
원에 관한 사항

13. 협업과제 중 시스템 연계·
통합과 정보공유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4. 지식행정제도의 운영·대외

14.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15.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 · 지원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지역정보화 정책 ·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 · 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9.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20.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 · 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1. 삭 제

22.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 · 정책의 기획 · 총괄 및 지원

23.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추진 과 총괄 · 조정

24.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교류 ·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협력

15.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 · 개선

16.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 · 개선

17. 행정사 제도의 연구 · 개선 및 운영 · 지원

18.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19.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20.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 · 개선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 · 확산

21.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 · 점검 및 평가

22.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 · 운영과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23.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2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 관련 평가와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25.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관련 해외진출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7.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28.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9.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발굴에 관한 사항

30.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림,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2.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도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3. 전자증명서에 관한 제도 개선과 전자증명서의 발급·유통에 관한 사항

34.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35.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26.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7.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28. 문서·관인과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29.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30.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홍보 및 제도화 연구

31.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과 서비스 과제의 발굴·관리

32.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확산과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33. 공무원 제안 제도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개선

34. 생활공감정책의 추진과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35.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6. 조직개편·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

<u>통합에 관한 사항</u>	<u>와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u>
<u>36.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u>	<u>직제·기능의 총괄·조정</u>
<u>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u>	<u>3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u>
<u> 조성</u>	<u>영에 관한 총괄·조정·관리</u>
<u>37.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u>	<u>와 관련 법령에 관한 협의</u>
<u> 프트웨어의 개발·보급과 유</u>	<u>38.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u>
<u> 지관리에 관한 사항</u>	<u>제도 운영의 지원</u>
<u>38. 전자정부 관련 제품(「지능</u>	<u>39.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u>
<u> 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u>	<u>· 총괄과 중기인력운영계획의</u>
<u> 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u>	<u>수립</u>
<u> 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u>	<u>40.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u>
<u> 스템은 제외한다)의 시험·평</u>	<u>제도의 개선</u>
<u> 가에 관한 사항</u>	<u>41.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u>
<u>39.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u>	<u>관리</u>
<u> (EA)의 도입·확산과 정보시</u>	<u>42.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u>
<u> 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u>	<u>발·운영·지원에 관한 사항</u>
<u>4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u>	<u>43.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u>
<u> 운영 지원</u>	<u>2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대상</u>
<u>41.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u>	<u>직위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의</u>
<u> 획의 수립 및 평가</u>	<u>44.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u>
<u>42.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u>	<u>따른 직위의 정급을 실시하는</u>
<u> 및 제도 개선</u>	<u>경우 등에 관한 협의</u>
<u>43.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u>	<u>45.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u>
<u> 간 협의·조정</u>	<u>· 개선</u>
<u>44.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u>	<u>46.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u>
<u> 한 사항</u>	<u>및 제도 관리</u>

4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조
치에 관한 사항

46. 행정정보 목록 관리와 공동
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
한 사항

47.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
이용과 유통 기반 구축 계획
의 수립 및 시행

48.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49.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50.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과 사이버침
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5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5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
·지원과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7. 행정기관 등의 조직·기능
과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
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
한 사항

48.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49.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50.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53.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과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4.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와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55.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56.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7.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 도입에 관한 사항
58.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59.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60.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61.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62. 모바일 기반 전자정부서비스와 공통 인프라의 구축·운영

제14조(지방자치균형발전실) ①

지방자치균형발전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

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5.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제14조(지방행정국) ① 지방행정

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

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5.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

8.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9. ~ 13. 삭제

1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
한 사항

15.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부금품 모집(「기부금품
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
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제도
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7. ~ 19. 삭제

20.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21.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
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협조

22.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
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

지원

8.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부금품 모집(「기부금품
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
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제도
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2.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13.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
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협조

14.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
동 해외사업의 지원

15.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관리

1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에 관한 조사·연구

23.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24.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25.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26.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27.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28.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2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총괄

30.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지원

31.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관리

32.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33.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8.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9.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0.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1.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22.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사업의 추진

2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24.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

25. 자전거의 날 운영, 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26.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27.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

개편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3의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협조

34.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
별 시행계획 기획·총괄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협조

35.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
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도의 운영·발전

36.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
·분할·통합·명칭변경, 관
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3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
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
분에 관한 연구·지원

37의2.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
영에 관한 사항

38.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
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
구·개선 및 운영 지원

39.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
(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

지원에 관한 사항

28.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
악 및 대응

29.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30.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
정 및 대응

3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선

- 40.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유지
- 41.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 4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3.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 44.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개선
- 45.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제소 등 지원
- 46.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운영 지원
- 4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 4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 개선
- 4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의 지원 및 개선

5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1.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5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지원
53. 접경지역 및 섬지역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5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55.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5의2. 삭 제
56.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7.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연구 및 지원
58.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59. 정보화마을의 기획·개선
60.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 61.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62.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
동 해외사업의 지원
- 63.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 · 관리
- 64.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5.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66.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67.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 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 68.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 ·
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 69. 지역사회 활성화에 관한 기
획 및 관련 법령의 관리
- 70.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및 국
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 71. 지역주민 제안 사안의 해결
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
한 사항
- 7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문제 해결사업 추진

- 73.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희(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 74.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 75.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76.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 77.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지원
- 78.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 79.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 80.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 81. 주소정보 운영 및 조정 총괄
- 82.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 83. 주소정보 활용 지원 및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 84. 주소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85.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
중립·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사업의 추진

86.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
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
대책의 추진

87.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88.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89.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
비

90. 자전거의 날 운영·안전교
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
산

<신 설>

제14조의2(자치분권국) ① 자치분
권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2.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
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총괄
4.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
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의 수립·지원
5.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
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
의 개발·관리
6.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
제 개편 관련 법·제도의 운
영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종합계
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기획
·총괄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협조
9.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
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도의 운영·발전
10.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
·분할·통합·명칭변경, 관
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지원
12.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14.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15.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유지
16.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협조
18.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지원
19.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20.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신 설>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2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2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3.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24.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개선

25.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제소 등 지원

26.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운영 지원

제14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① 균형발전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의 운영 및 제도 개선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기금 관리의 지원 및 개선

4. 접경지역 및 섬지역 발전 중

합계획의 수립·시행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등 저발전 지역개

발사업의 기획·지원

6.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7.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

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10. 지역사회 활성화에 관한 기

획 및 관련 법령의 관리

11.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및 국

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역주민 제안 사안의 해결

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문제 해결사업 추진

14.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희(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15.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16.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7.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연구 및 지원

18.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19. 정보화마을의 기획·개선

20.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 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21.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에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22.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3.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4. 주소정보 운영 및 조정 총괄

25.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26. 주소정보 활용 지원 및 연구

제15조(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관리·연구·개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

개발에 관한 사항

27. 주소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8.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 대책의 추진

제15조(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재정경제실에 지방재정국, 지방세제국 및 지역경제지원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관리·연구·개선
2.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정보화 총괄
3.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u>산의 편성·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정보화 총괄</u> 6. <u>지방재정 분석·진단·공시 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u> 7. <u>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u> 8. 「<u>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u>」에 따른 <u>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u> 9. 「<u>지방재정법</u>」 제88조에 따른 <u>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u> 10. <u>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운영 및 지도</u> 11. <u>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u> 12. <u>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u> 13. <u>지방재정의 점검·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u> 14. <u>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u> 15. <u>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u>	<u>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u> 5. 「<u>지방재정법</u>」 제88조에 따른 <u>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u> 6. <u>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운영 및 지도</u> 7.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u> 8. <u>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u> 9. <u>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10. <u>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u> 11. <u>지방재정 분석·진단·공시 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u> 12. <u>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u> 13. <u>지방재정의 점검·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u> 14. <u>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u>
---	--

개선 총괄

16. 지방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
17.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1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재무회계·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19.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 19의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지도
20.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1.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개선
22.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3. 지방세의 중과세·비과세·감면·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24.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

개선 및 운영

15.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16. 지방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
17.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1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재무회계·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19.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지도
21.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2.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개선
23.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4. 지방세의 중과세·비과세·감면·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u>한 지원</u> 25. <u>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u> 26. <u>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u> 27. <u>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u> 28. <u>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u> 29. <u>지방세특례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u> 30. <u>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 운영</u> 31. <u>부동산 과세자료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생산·관리</u> 32. <u>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u> 33. <u>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조사 및 연구</u> 34. <u>지방세입 납부체계의 연구·개선</u> 35. <u>지방세 징수제도 및 업무개선 등 총괄</u> 36. <u>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제도의 운영</u>	25. <u>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u> 26. <u>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u> 27. <u>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u> 28. <u>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조사 및 연구</u> 29. <u>지방세입 납부체계의 연구·개선</u> 30. <u>지방세 징수제도 및 업무개선 등 총괄</u> 31. <u>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제도의 운영</u> 32. <u>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u> 33. <u>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 운영</u> 34. <u>부동산 과세자료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생산·관리</u> 35. <u>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u> 36. <u>지방세외수입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u> 37. <u>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u>
---	---

37. 지방세외수입 제도의 연구
· 개선 및 운영

38.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징수
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총괄

39. 지방세외수입 통계 관리 ·
분석 및 정보화 총괄

40.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
의 지원

41.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
제동향 · 통계와 관련된 사항

42.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
출 총괄 지원

43.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
의 지원

4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
가에 관한 사항

45. 지방자치단체의 향토 핵심
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

4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
의 발굴 · 정비

47.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48. 새마을금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 · 감독

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총괄

38. 지방세외수입 통계 관리 ·
분석 및 정보화 총괄

39.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
단체 조례의 제정 · 개정·에 대
한 지원

40. 지방세특례제한에 관한 기
본계획 수립 및 통보

4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
의 지원

4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
제동향 · 통계와 관련된 사항

43.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
출 총괄 지원

44.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
의 지원

4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
가에 관한 사항

46. 지방자치단체의 향토 핵심
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

47.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규
제의 발굴 · 정비

48.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지원

49.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
원

50.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
· 감독

51.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에 관
한 사항

5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
체 출자·출연기관 정책 수립
총괄

5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
체 출자·출연기관 관련 제도
의 연구·운영에 관한 사항

5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
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55.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
감독

56.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운
영에 관한 사항

5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운영 지원

49. 새마을금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

50.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
원

51.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
· 감독

52.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에 관
한 사항

5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
체 출자·출연기관 정책 수립
총괄

54.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
체 출자·출연기관 관련 제도
의 연구·운영에 관한 사항

55.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
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56.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
감독

57.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운
영에 관한 사항

58.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운영 지원

④ 지방재정국장은 제3항제1호
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재난안전관리본부) ① (생략)

② 재난안전관리본부에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재난협력실 및 비상대비정책국을 둔다.

③ (생략)

제22조(안전정책실) ① 안전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⑤ 지방세제국장은 제3항제2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제3항제41호부터 제5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재난안전관리본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안전예방정책실, 자연재난실, 사회재난실, 재난복구지원국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안전예방정책실) ① 안전예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안전예방정책실에 안전정책국, 예방정책국 및 재난안전정보센터를 두되, 각 국장 및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운영

3.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
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공무
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
의 수립 및 운영
7.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
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
가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
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
는 것에 한정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
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9. 소방안전교부세의 배정·운
영 및 제도 개선
10. 국가재난정보통신 관련 정
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1.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
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
3.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
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공무
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
의 수립 및 운영
7.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
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
가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
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
는 것에 한정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
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9. 소방안전교부세의 배정·운
영 및 제도 개선

<u>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12. <u>재난 관련 정보시스템의 총괄·조정 및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13. <u>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제도·정책에 관한 사항</u> 14. <u>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15. <u>재난관리정보 활용체계 및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u> 16. · 17. <u>삭 제</u> 18. <u>생활안전정책 총괄·지원</u> 19. <u>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개선</u> 20. <u>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u> 21. <u>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지원</u> 22. <u>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기획·제도개선</u> 23. <u>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사업 추진</u> 24. <u>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u>	10. <u>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u> 11. <u>재난안전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u> 12. <u>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13. <u>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u> 14. 「<u>승강기 안전관리법</u>」 제49조에 따른 <u>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u>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15. <u>승강기 안전이용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u> 16. <u>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u> 17. <u>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개정 및 협의·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18. <u>재난의 예방 등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u> 19. <u>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u> 20. <u>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담당 종사자 예방안전 교육 총괄·조정</u>
---	--

25. 어린이 보호구역 · 도시공원 ·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26. 어린이안전 정책 총괄 및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7.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8. · 29. 삭 제

30.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31. 삭 제

32.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33. 안전 전문인력 관리 · 교육 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34. 국민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 · 조정

3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6.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37.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

2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직원의 현황 관리

2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3.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 · 조정

24. 안전기준의 등록 · 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운영

25.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6. 생활안전정책 총괄 · 지원

27.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개선

28.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29.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 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 · 지원

3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기획 · 제도개선

31.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사업 추진

3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38.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9.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40.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
의 제정·개정 및 협의·조정
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1. 재난의 예방 등 홍보 및 재
난예방 기법 연구

42.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
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43.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담당 종사자 예방안전 교육
총괄·조정

4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원의 현황관리

4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
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6.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조정

47. 안전기준의 등록·심의 등
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33. 어린이 보호구역·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
한 사항

34. 어린이안전 정책 총괄 및 어
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
육에 관한 사항

35. 재난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
에 관한 사항

36.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재난 취약 분야 및 지역에 대
한 현장점검 기획·총괄

37.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긴급 안전점검을 위한 특별
사법경찰관리의 운영

39.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40. 물놀이,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추진

41.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
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
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2.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

· 운영

48.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49.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

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

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0.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 ·

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1.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

에 관한 정책 수립 · 조정

52. 재난안전 기술개발 관련 계

획의 총괄 및 조정

53.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3.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44.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

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45. 안전 전문인력 관리 · 교육훈

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

육에 관한 사항

46. 국민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 · 조정

47.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8. 국가재난정보통신 관련 정책

의 총괄 · 조정에 관한 사항

49.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의 구

축 · 운영에 관한 사항

50. 재난 관련 정보시스템의 총

괄 · 조정 및 구축 · 운영에 관

한 사항

51. 재난관리정보 활용체계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2.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53.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제도 ·

정책에 관한 사항

제23조(재난관리실) ① 재난관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대비·대응·복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2.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4.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안전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예방정책국장은 제3항제16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은 제3항제48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23조(자연재난실) ① 자연재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연재난실에 재난관리정책국 및 자연재난대응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대비·대응·복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2.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5.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특별
교부세의 배정 · 운영 및 제도
개선

6. 재난관리기금제도 운영에 관
한 사항

7.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에 관한 사항

8. 재난대비 · 대응 · 복구 등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9. 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에 관
한 사항

1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
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11.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2.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14. 저수지 · 댐 안전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15.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16. 방재시설의 유지 · 관리 평

3.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
한 사항

4.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5.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특별
교부세의 배정 · 운영 및 제도
개선

6. 재난관리기금제도 운영에 관
한 사항

7.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에 관한 사항

8. 재난대비 · 대응 · 복구 등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9. 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에 관
한 사항

10.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의
기획 · 평가 총괄

11. 국가 재난대응 분야별 상시
훈련에 관한 사항

1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
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3.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
축 총괄 · 조정

14. 재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

<u>가에 관한 사항</u> <u>17.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17의2.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u> <u>17의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17의4. 방재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17의5.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 및 우수유출저감 대책의 수립·운영</u> <u>17의6.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및 방재관리 대책 대행제도의 운영</u> <u>17의7. 지진·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u> <u>17의8.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추진</u> <u>17의9. 지진·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u> <u>18.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u> <u>19.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u>	<u>· 학회·협회·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u> <u>15. 민간부문의 재난대비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u> <u>16.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수습·복구 활동 지원</u> <u>17. 재난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u> <u>18.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u> <u>1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u> <u>20.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u> <u>21.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u> <u>2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u> <u>23.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u> <u>24.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u> <u>25.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u> <u>26.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
---	---

20. 삭 제

21. 재난관리 매뉴얼 총괄·운영 및 평가

22.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의 기획·평가 총괄

23. 국가 재난대응 분야별 상시 훈련에 관한 사항

2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25. 재난분야 매뉴얼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2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지원은 제외한다)

27. 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운영은 제외한다)

28.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27.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

28.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9. 방재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운영

31.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 교육의 실시 및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의 운영

32.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 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33.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

34. 재난관리 매뉴얼 총괄·운영 및 평가

35. 재난분야 매뉴얼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3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지원은 제외한다)

<u>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u> 29. <u>재난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u> 30. <u>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u> 31. <u>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u> 32. <u>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개발·보급은 제외한다)</u> 33. <u>삭 제</u> 34. <u>재난복구 정책과 대책의 수립·조정·총괄</u> 35. <u>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u>	<u>37. 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운영은 제외한다)</u> <u>38.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u> <u>39. 재난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u> <u>40. 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u> <u>41.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u> <u>42. 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u>
--	---

<u>관한 사항</u>	<u>의 개발·보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개발·보급은 제외한다)</u>
<u>36.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 예산의 운영·관리</u>	
<u>37.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u>	<u>43. 지진·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u>
<u>38.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44.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추진</u>
<u>39. 자연재난 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의 운영</u>	<u>45. 지진·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u>
<u>40. 재해복구사업 사후 분석·평가 운영 총괄</u>	<u>④ 재난관리정책국장은 제3항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u>
<u>41.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u>	<u>⑤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제3항 제32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u>
<u>42.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 지원</u>	
<u>43. 재난구호와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총괄 및 제도의 운영</u>	
<u>44. 이재민 구호 및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관한 사항</u>	
<u>45. 재난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46. 재난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u>	

한 사항

47.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7의2. 의연금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7의3.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

성에 관한 사항

47의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

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

부금품의 모집등록에 관한 사

항

48.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49. 풍수해 보험 등 재난과 관련

된 보험의 개발·보급 및 보

험료의 지원

50.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

축 총괄·조정

51. 삭 제

52. 재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

· 학회·협회·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3. 민간부문의 재난대비 교육

· 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54.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수습·복구 활동 지원

55. 재난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56.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제23조의2(재난협력실) ① 재난협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 분야 협업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사회재난 분야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 대응역량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사회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

5. 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 관리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23조의2(사회재난실) ① 사회재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회재난실에 사회재난정책국 및 사회재난대응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 분야 협업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사회재난 분야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 대응역량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사회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

5. 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7. 재난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재난 취약 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기획·총괄

9.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긴급 안전점검을 위한 특별 사법경찰관리의 운영

11.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2. 물놀이,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추진

13. 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보급

14.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총괄

15.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 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16.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 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운영 총괄

17. 재난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18. 예기치 못한 대형·복합재

6. 사회재난 관리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 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보급

8.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총괄

9.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 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10.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 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운영 총괄

11. 재난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12. 예기치 못한 대형·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

13. 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분석

14. 사회재난 관리대책의 수립·조정 및 사전대비·대응 총괄

15. 사회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 사회재난 분야 실무매뉴얼

<u>난 대비체계 구축</u> 19. <u>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분석</u> 20. <u>사회재난 관리대책의 수립·조정 및 사전대비·대응 총괄</u> 21. <u>사회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u> 22. <u>사회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u> 23. <u>사회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u> 24. <u>사회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25. <u>사회재난 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u> 26. <u>사회재난 관련 원인·상황 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u> 27. <u>사회재난 분야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u> 28. <u>사회재난 유형별 표준대응</u>	<u>의 운영에 관한 사항</u> 17. <u>사회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u> 18. <u>사회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19. <u>사회재난 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u> 20. <u>사회재난 관련 원인·상황 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u> 21. <u>사회재난 분야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u> 22. <u>사회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u> 23. <u>사회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u> 24. <u>테러 대비 관련 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25. <u>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u> 26. <u>국가핵심기반 보호 및 관리 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u> 27. <u>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u>
--	--

<u>방법의 개발·보급</u> <u>29. 사회재난 위협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u> <u>30. 테러 대비 관련 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u>31. 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u> <u>32. 국가핵심기반 보호 및 관리 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u> <u>33.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 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34. 사회재난 관련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u> <u>35. 사회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u> <u>36. 사회재난 기능별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u> <u>37. 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 계획 수립</u> <u>38. 재난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단 파견·운영 총괄</u> <u>39. 구조·구급·수색 등 지원</u>	<u>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28. 사회재난 관련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u> <u>29. 사회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u> <u>30. 사회재난 기능별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u> <u>④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제3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u> <u>⑤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제3항 제14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u>
---	--

을 위한 특수 기동 인력의 편
성총괄 및 재난현장 파견 관
련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조
정
<신 설>

제23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① 재
난복구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
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재난복구 정책과 대책의 수
립·조정·총괄
2.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3.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
구 예산의 운영·관리
4.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
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5.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
업의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연재난 복구사업 사전심의
제도의 운영
7. 재해복구사업 사후 분석·평
가 운영 총괄

8.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9.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 지원
10. 재난구호와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총괄 및 제도의 운영
11. 이재민 구호 및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난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난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5. 의연금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 관한 사항
18.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u>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u> <u>19. 풍수해 보험 등 재난과 관련된 보험의 개발·보급 및 보험료의 지원</u> <u>20. 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 계획 수립</u> <u>21. 재난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단 파견·운영 총괄</u> <u>22. 구조·구급·수색 등 지원을 위한 특수 기동 인력의 편성총괄 및 재난현장 파견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를 조정</u>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u>10퍼센트</u> ----- ----- ----- --.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② ----- ----- -----.

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5명을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제6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6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8개 직위 범위에서

----- 113명-----

-----.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10퍼
센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8개 직위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방
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

제63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은 안전정책실에 두는 1개 정책
관등, 재난관리실에 두는 3개
정책관등, 재난협력실에 두는 1
개 정책관등 및 국립과학수사연
구원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
는 정책관등 및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되, 전문직공무원
을 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
속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
부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
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생 략)

행정안전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
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3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현행
과 같음)

② -----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예
방정책실에 두는 재난안전정보
센터, 자연재난실에 두는 재난
관리정책국·자연재난대응국,
사회재난실에 두는 사회재난정
책국·사회재난대응국, 재난복
구지원국 -----.

-- 과 -----

-----.

③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55</u>	<u>1,650</u>	-5
•	•	•	
•	•	•	
일반직 계	<u>1,613</u>	<u>1,608</u>	-5
고위공무원단	<u>36</u>	<u>35</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총경 포함)	<u>1,544</u>	<u>1,540</u>	-4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20